

의안번호	제 87 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김국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9월 4일

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

(김국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0월 4일

발 의 자 : 김국기 · 박경숙 · 김꽃임 · 이양섭 ·
이의영 · 이종갑 · 임병운 의원

1. 제안이유

- 도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(안 제3조)
-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(안 제4조)
-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(안 제5조)
-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협조(안 제6조)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불 임

나. 조례안예고 : 2022.10.7 ~ 2022.10.12.

다. 협 의 :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사회적경제과

라. 비용추계 : 불 임

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착한가격업소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·품질·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, 현지 실사·평가 등을 통해 시장·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이용활성화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“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”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·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4조(착한가격업소의 지원)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
 2.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
 3.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보조
 4.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
 5.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
 6.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
 7.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제5조(운영현황 점검 등)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(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협조)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,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소상공인기본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
 - 착한가격업소 표지판,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, 쓰레기봉투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, 소모품보급,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, 홍보비,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(국비보조사업)
-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및 홍보 강화

3. 관련조문

- 안 제4조(착한가격업소의 지원)

4. 비용 추계결과

- 재정수반요인 :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업비 및 홍보비
- 추계의전제 :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
- 추계결과(1년간) : 382,000천원
 -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: 320개소 × 850,000원 = 272,000천원
 - ※ '21. 12월말 기준 착한가격업소 : 320개소
 - 착한가격업소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: 80,000천원
 - ※ 高물가 경기침체로 착한가격업소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 추가지원 하고자 함
 - 착한가격업소 홍보 강화 : 30,000천원
- 재원조달 방안
 -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: 국비(30%), 도비(15%), 시군비(55%)
 - 착한가격업소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: 도비(100%)
 - 착한가격업소 홍보 강화 : 도비(100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 : 붙임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사업 등	1,670,000	382,000	382,000	302,000	302,000	302,000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재원구분	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			(2023년)	(2024년)	(2025년)	(2026년)	(2027년)
합 계	소 계	1,670,000	382,000	382,000	302,000	302,000	302,000
	국비(24%)	408,000	81,600	81,600	81,600	81,600	81,600
	도비(31%)	514,000	150,800	150,800	70,800	70,800	70,800
	시군비(45%)	748,000	149,600	149,600	149,600	149,600	149,600
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	소 계	1,360,000	272,000	272,000	272,000	272,000	272,000
	국비(30%)	408,000	81,600	81,600	81,600	81,600	81,600
	도비(15%)	204,000	40,800	40,800	40,800	40,800	40,800
	시군비(55%)	748,000	149,600	149,600	149,600	149,600	149,600
착한가격업소 이차보전금 지원사업	소 계	160,000	80,000	80,000	-	-	-
	국비(%)	-	-	-	-	-	-
	도비(100%)	160,000	80,000	80,000	-	-	-
	시군비(%)	-	-	-	-	-	-
착한가격 업소 홍보강화	소 계	15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
	국비(%)	-	-	-	-	-	-
	도비(100%)	15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
	시군비(%)	-	-	-	-	-	-